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방역대책 회의(2022.1.14., 1.21.)
- 나. 오미크론 확산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선제적 시범운영 관련 협조 요청
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076호, 2022.1.19.)

2.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상황에 대비하여 동네 병·의원 중심의 일상적인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,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주요 변경사항

- (급여범위 확대)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아래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
 -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이 있는 환자
 - 방역패스 확인 목적
- (본인부담) 환자 본인부담 면제
- (적용시기) 오미크론 전파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적용
 - 오미크론 우세지역(광주, 전남, 평택, 안성)의 호흡기전담클리닉
→ 2022.1.26. 진료분부터 적용
 - 오미크론 우세지역 외 호흡기전담클리닉 : 추후 공지 예정

붙임: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

주무관 **송서현** 보건사무관 **조영대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건강보험정책 **최중균**
국장 전결 2022. 1. 25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500 (2022. 1. 25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